

泰山獎學會規定

태산 장학 회 규정

제정 2010 . 02. 10
개정 2012 . 02. 26
개정 2013 . 02. 24
개정 2014 . 03. 02

제1장 總則

총칙

제1조(目的)

목적

本 規定은 慶州崔氏峻雲公後孫 宗中規約” 제 4조 제4항에 依據하여 宗員의
子女증 學業成績이 優秀하고 生活이 어려운자에게 獎學生 選拔과 獎學金을
支援키 위한 基金과 宗中發展을 위한 基金의 造成 및 支給에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 으로 한다.

제2조(適用範圍)

적용범위

- 1 . 本規定은 宗中規約 제5조(會員의 資格) 및 規約 제6조 (會員의權利의
義務)를 다하고 있는 宗員의 後孫에게 適用한다.
- 2 . "宗中"의 獎學生 選拔基準과 獎學金 支給에 관한 事項은 別途의 規定이
없는 한 本 規定에 따른다.

제3조(獎學金의 種類) 獎學金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學費補助金
2. 修學補助金
3. 入學補助金
4. 特別獎學金
5. 勤勞補助金
6. 優秀獎學金

제4조 (獎學金의 支給規定)

1. 學費補助金은 登錄金의 全額 또는 一部를 支給받는 獎學金을 말하며, 支給에 관한 事項은 每年 獎學委員會에서 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2. 修學補助金은 家系가 困難한 소년. 소녀 家長에게 學業을 繼續할 수 있도록 每年 1인을 選定하여, 月別 또는 分期別로 生活費를 補助하는 支給하는 獎學金을 말하며. 對象者 選定및 支給에 관한 事項은 每年 獎學委員會에서 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3. 入學補助金은 初等. 中等. 高等. 大學校(2년제 包含) 新入生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學生에게 支給하는 入學祝賀金을 말하며. 支給에 관한 事項은 每年 獎學委員會에서 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4. 特別獎學金은 우수 大學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포항공과 대학교, 한국과학기술대학교)에 入學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支給하는 격려금이며, 支給에 관한 事項은 每年 獎學委員會에서 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5. 勤勞補助金은 勤勞獎學生으로 選拔된 學生에게 勤勞 代價로 支給하는 獎學金을 말하며. 對象者 選定및 支給에 관한事項은 每年 獎學委員會에서 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6. 優秀獎學金은 慶州崔氏峻雲公後孫 宗親 子女중 中.高 大學校 在學生이며, 前年度 學校成績이 上位 10%내 學生에게 지급한다, 對象者 選拔및 支給에 관한 事項은 獎學委員會에서 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제5조(事業)

1. 獎學基金의 造成및 支給.
2. 其他 目的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諸般 事業.

제6조(基金) 기금

1. 基金은 宗中規約 제 2조(目的) 및 제4조4항(會員子女의 育英과 獎學事業)의 施行을 위한 宗中規約 제43조 2항에 의한 (泰山빌딩의 特別會計上 營業 剩餘金 중 一部の 轉用)의 財源과 宗員의 寄託金 및 其他의 收入으로 한다.
기금 중종 규약 목적 회원 자녀 육영 장학 사업 시행 중종 규약 태산 특별회계 상 영업 잉여금 일부 전용 재원 종원 기탁 금 기타 수입
2. 基金은 本 規定에서 定한바 以外로 使用할 수 없다.
기금 본 규정 정 이외 사용

제2장 獎學委員會 장학 위원회

제7조(獎學委員會의 設置 등) 장학 위원회 설치

1. “宗中은” 獎學事業의 全般的인 運營事項을 審議하고. 總會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泰山 獎學委員會(이하 “獎學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중종 장학사업 전반적 운영 사항 심의 총회 자문 응 태산 장학 위원회 장학 위원회
2. “獎學委員會”의 委員長은 宗中 會長으로 하며, 委員은 理事會에서 推戴되는 若干名과, 事務局長으로 構成한다.
장학 위원회 위원장 중종 회장 위원 이사회 추대 약간 명 사무국장 장 구성
3. “獎學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한다.
장학 위원회 사항 심의
 - 가. 獎學事業의 全般的인 運營에 관한 事項
장학사업 전반적 운영 사항
 - 나. 獎學金 支給基準 및 獎學人員 配定에 관한 事項
장학금 지급 기준 장학 인원 배정 사항
 - 다. 獎學에 관한 規定의 制定 및 改廢
장학 규정 제정 개정 폐제
 - 라. 獎學金의 支給 및 還收에 관한 事項
장학금 지급 환수 사항
 - 마. 其他 委員長이 附議하는 事項
기타 위원장 부의 사항

제8조(會議 및 議決) 회의 의결

1. 제6조 2항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委員會의 委員長은 必要에 따라 隨時로 委員會를 召集할 수 있다.
규정 설치 위원회 위원장 필요 수시 위원회 소집
2. 委員會의 議決은 在籍 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며, 議決된 事項은 會長의 承認을 받는다.
위원회 의결 재석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의결 사항 회장 승인

附則 (2010. 02. 10)
부칙

本 規定은 制定 및 改定한 날부터 施行한다.
본 규정 제정 개정 시행